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4년 7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수도과장 이현주)

□ 제안이유

○ 수도법 개정(2001. 3. 28 법률 제6449호)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1호)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중수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금까지는 건축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였으나 앞으로는 물 아껴쓰기 정책일환 으로 6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백화점, 터미널, 업무시설 및 공공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중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하도록 함. (안 제5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의무적 설치 대상은 ?	○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건축연면적 60,000㎡(약 18,000평)이상이면 의무적 설치 대상임.
○ 중수도를 설치한 건물이 있는지 ?	○ 우리시에는 엘지백화점이 있음.
○ 설치대상을 권장사항에 의무사항으로 하나 건물규모가 축소되어 물 절약 차원의 반대적 현상이 아닌지 ?	○ 법 규정의 의무사항으로 규모가 증가하였음.
○ 시설물 규모가 의무대상은 아니더라도 적극 권장할 내용인데 홍보대책은 ?	○ 중수도 설치 건물주는 물 절약과 혜택을 부각하여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적극 권장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68호
의 결 년월일	2004. 7. 16 (제113회)

제안년월일 : 2004년 7월 2일

제 안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수도법 개정(2001. 3. 28, 법률 제6449호)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1호)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중수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금까지는 건축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였으나, 앞으로는 물 아껴쓰기 정책의 일환으로 6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백화점·터미널·업무시설 및 공공건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중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5. 기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치대상) ①영 제15조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급수구경 75밀리미터이상 또는 연면적 30,000평방미터이상의 대형 건축물 및 시가 건설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제5조(설치대상)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③시장은 시의 물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5. 기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삭 제>